

변경 대비표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핀셋 중소형 증권투자신탁[주식]

□ 변경 사항 : ①운용기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

-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→ 수익률 변동성 / 표준편차: 23.38%

②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

③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④제3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
□ 효력발생일: 2020.12.30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표지			
투자위험등급	운용기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 기준 변경	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	<u>수익률 변동성</u>
요약정보			
투자위험등급	운용기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 기준 변경	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	<u>수익률 변동성</u> <u>표준편차: 23.38%</u>
투자비용	제3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12. 18 기준</u>
	동종유형 총보수 기준일 기재	-	<u>2020.10. 30 기준</u>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제3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12. 18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20. 8. 31 기준	<u>2020. 11. 30 기준</u>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20.8.31 기준	<u>2020.11.30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20.8.31 기준	<u>2020.11.30. 기준</u>


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 대상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	2) 지분증권(주식 등) :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(주권상장법인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)	2) 지분증권(주식 등) :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(주권상장법인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)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운용기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	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	<u>수익률 변동성</u> <u>표준편차: 23.38%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제 3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 12.18. 기준</u>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보	제 3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 12.18.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 3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 12.18.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제 3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 12.18. 기준</u>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20. 8. 31 기준	<u>2020. 11. 30. 기준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나. 주요 업무 (3) 업무위탁 ② 수익자명부 작성업무의 위탁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	한국예탁결제원	전자등록기관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수익자총회 등 (3)수익자총회 결의사항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	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

		<p>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.</p> <p>-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/ 신탁업자의 변경 /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(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) / 투자신탁종류의 변경/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/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(법령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) / 집합투자업자 변경 /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/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/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</p> <p><u>〈신설〉</u></p>	<p>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.</p> <p>-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/ 신탁업자의 변경 /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(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) / 투자신탁종류의 변경/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/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(법령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) / 집합투자업자 변경 /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/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/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</p> <p>- <u>다만,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한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될 경우 수익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나 신탁업자에게 보상하여야 함</u></p>
--	--	--	--

			<p><u>1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</u></p> <p><u>2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</u></p> <p><u>3.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에 동의하거나, 신탁업자가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</u></p> <p>- 위의 사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제 5 영업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함</p> <p><u>1. 대상금액 :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수익자총회 결의일 익영업일의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과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부대비용(자문료, 시스템개발비 등)을 포함</u></p> <p><u>2. 대상기간 : 변경 시행일로부터 1 년간. 단,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함</u></p> <p>-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위의 보상 등 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(법제 190 조제 3 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</p>
--	--	--	---

			<u>및 신탁업자로 한다)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. 정기보고서 (2) 자산운용보고서 (3)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	<u>한국예탁원</u> <u>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</u>	<u>전자등록기관</u> <u>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1)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	<u>한국예탁원</u>	<u>전자등록기관</u>